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내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 유명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96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3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여부	3
2. 제정안의 구성체계	9
3. 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11
4. 정부의견 등	12
5. 주요 조문별 검토	13
가. 지원대상의 범위(안 제3조)	13
나. 지원내용 및 지원 기간(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19
※ 참고자료	23

I. 제안경위

1. 발의자 : 유명하의원 등 10인
2. 발의일 : 2024. 9. 2.
3. 회부일 : 2024. 9.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만 정착을 지원하고 있고, 증·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가 영주귀국하는 증·고손자녀의 주거 불안정 및 경제적 빈곤 지속 등 국내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주거비, 생계비 등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증·고손자녀의 생계안정 및 원활한 초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또는 고손자녀일 것,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람이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기간에 국외로 이주하였을 것,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등 이 법에 따른 정착지원 적용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4조).
- 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정착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질문 등을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등에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 라. 국가보훈부장관은 후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초기정착비,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진료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10조 및 제12조).

Ⅲ. 검토의견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여부

- 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함)에 따라 정착지원을 받게 되나,¹⁾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정착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1) 독립유공자법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독립유공자법 제24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3. 제26조에 따라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독립유공자법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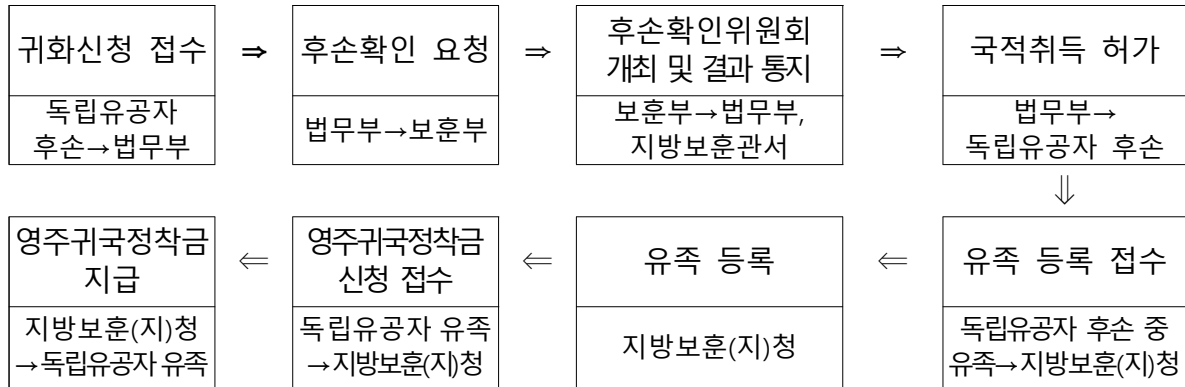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 1] 영주귀국 독립유공자등 정착금 지급 절차



자료: 국가보훈부

□ 현재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²⁾)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교육·취업·의료·양로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있음.

○ 또한,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게는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유족을 손자녀까지로 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2)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봄(법 제5조제1항제3호).

정착지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귀국하는 중·고손
자녀는 주거 불안정 및 경제적 빈곤 등 국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표 2] 독립유공자법상 수권자(유족) 현황('24.9월 기준)

(단위 : 명, %)

구 분	본 인	배 우 자	자녀·자부	손 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합 계
인원수	5	181	3,685	4,950	108	12	8,941
비 율	0.1	2	41.2	55.4	1.2	0.1	100

자료: 국가보훈부

[표 3] 독립유공자법상 유·가족 지원 현황('19~'24)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대상자수	지원액	대상자수	지원액	대상자수	지원액	대상자수	지원액	대상자수	지원액	대상자수	지원액
사 업													
영주귀국정착금(가구)		10	560	8	465	9	535	8	485	10	1,213	5	562
생활조정수당		198	608	223	680	259	809	278	875	289	917	393	1,344
교육지원		701	1,445	741	1,468	749	1,309	700	1,317	601	1,223	597	1,230
취업지원		137	28	149	27	90	17	86	16	68	17	107	28
대부지원		8,036	511	8,351	574	8,558	730	8,761	700	8,859	752	8,933	520
의료 지원	보훈병원	32,839	790	30,020	918	32,926	960	30,410	864	35,856	1,098	20,680	575
	위탁병원	29,748	465	27,015	475	19,233	342	20,478	399	22,404	432	13,460	317
양로지원		5	83	6	100	5	83	3	50	5	83	7	119
재가복지서비스		319	850	319	873	320	874	261	845	236	802	203	690
합 계		-	5,340	-	5,580	-	5,659	-	5,551	-	6,537	-	5,385

자료: 국가보훈부

[표 4] 최근 10년간 영주귀국정착금³⁾ 지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6월)	합계
예산액	7,460	1,020	950	805	615	427	427	427	1,060	1,060	14,251
지급세대	125	11	17	9	10	8	9	8	10	4	211
지급결정액	6,810	595	930	495	560	465	535	485	1,213	473	12,561

자료: 국가보훈부

- 제정안은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들에게 초기 정착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계안정 및 원활한 초기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첫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 보상을 할 필요성이 있음.

3)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정착금 지급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1억5천3백만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1.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5천3백만원
	2.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가.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8천9백만원
	나.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1억2천8백만원
	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억5천3백만원

- 둘째,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고령화됨에 따라, 현재 특별귀화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대부분이 중·고손자녀라는 점에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후손 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표 5]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인정 후손 현황 (최근 10개년)

(단위: 명, %)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6월)	계	비율
자	0	2	0	1	0	0	0	1	0	0	4	1
손	4	22	6	11	8	10	9	8	1	4	83	27
중손	5	27	4	17	12	17	12	24	2	6	126	41
고손	6	20	2	11	4	8	6	16	0	10	83	27
내손 이하	0	1	0	7	1	0	0	2	0	1	12	4
계	15	72	12	47	25	35	27	51	3	21	308	100

자료: 국가보훈부

- 그 밖에,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⁴⁾은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 4)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후손은 특별귀화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정착지원의 대상은 손자녀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견해⁵⁾가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음.

- 다만, 지원 대상자 범위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훈 관계법률에 따라 보상이 되는 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범위⁶⁾와 비교할 때 그 대상 범위가 넓은 측면이 있으므로, 보훈보상의 취지,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손의 몇 대까지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지원내용 및 지원 기간과 관련하여, 제정안의 입법취지가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이 귀국 초기에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하도록 지원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에 필요한 기간 및 지원 내용의 범위에 대해서도 법안 심사 시에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2.;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2016. 11. 2.).

6) 독립유공자법은 보상을 받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 없는 미성년 제매로 규정하고 있음.

2.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별도의 장을 구분하지 않고, 총칙규정에 해당하는 4개의 조문(목적, 국가 등의 책무, 적용 대상자, 국내 정착지원 신청 및 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8개의 조문(초기정착비 지원,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 등, 진료비 지원 등), 그 밖에 보칙에 해당하는 4개의 조문(초기정착비 등의 환수)과 벌칙을 규정하여,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6] 제정안 구성 체계

조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국가의 책무
제3조	적용 대상자
제4조	국내 정착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	조사·질문 등
제6조	금융정보의 제공
제7조	초기정착비 지원
제8조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 등
제9조	진료비 지원
제10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11조	지원기간
제12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13조	초기정착비 등의 환수
제14조	반환의무의 면제
제15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17조	벌칙
부칙	

□ 참고로, 제정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함)에 따른 지원범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7] 독립유공자법과 제정안의 지원범위 등 비교

구 분	독립유공자법	제정안
정착지원	○ 정착금 지급	○ 초기정착비 지급 (생활비, 주거비)
생계안정	○ 보상금·생활조정수당 등 지급 ○ 생활안정지원금(보상금 미수급자)	
교육 등 지원	○ 교육·생업·대부지원	-
취업지원	○ 취업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및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
의료지원	○ 보훈병원·위탁병원 의료지원	○ 진료비 지원 (보훈병원·위탁병원 의료지원)
복지지원	○ 양로·요양양육지원, 재가복지서비스	○ 재가복지서비스
주거지원	○ 주택 우선 공급	○ 주택 우선 공급
기타	○ 수송시설 및 고궁 등 이용지원	-

3. 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른 독립유공자 후손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5년간(2025년~2029년) 주거비 113억 1,400만원, 생계비 158억 6,000만원,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41억 4,900만원 등 총 320억 8,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 다만, 제정안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지급인원인 515명의 지원기간이 종료하는 2030년부터는 지급인원이 95명으로 예상되어 재정 소요액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⁷⁾

[표 8] 향후 5년간 독립유공자후손지원 추가재정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지급인원	515	534	553	572	591	-
합 계	5,967	6,190	6,417	6,644	6,870	32,088
주거비	2,107	2,185	2,263	2,341	2,418	11,314
생계비	2,954	3,063	3,172	3,281	3,390	15,860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773	801	830	858	887	4,149
진료비	99	106	114	122	130	571
재가복지서비스	34	35	38	42	45	194

자료: 국가보훈부

7) 최초 지급인원 515명은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가 개최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독립유공자의 증손 자녀로 인정된 인원이며, 이후 2026년부터는 매년 19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참고] 법안 관련 소요 예산 추계(p.23).

4. 정부의견 등

-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의 생계안정 및 초기정착에 대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그 대상을 저소득층 등 생계곤란자에 한하여 한시(5년 이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는 부양·양육 관련성이 낮은 증손자녀 이하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보훈보상의 취지와 상충되고, 타 보훈대상자와 현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임.
- 국토교통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주거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추천자 중 다른 특별공급추천자(대기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광복회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계안정 및 원활한 초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임.

5.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지원대상의 범위(안 제3조)

- 제정안 제3조는 ①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법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⁸⁾의 후손으로 인정한 사람 중 ②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를 받은 사실이 없고, ③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람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기간에 국외로 이주하여, 국외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다 영주귀국을 목적으로 「국적법」 제4조,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④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또는 고손자녀(증손자녀가 제정안에 따른 정착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고손자녀 중 최연장자)를 이 법의 지원을 받는 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적용 대상자)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정착지원을 받는다. 1.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曾孫子女) 또는 고손자녀(高孫子女)일 것. 다

8) 독립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만, 고손자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해당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가 이 법에 따른 정착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모두 사망하였을 것

나. 해당 독립유공자의 고손자녀 중 가장 나이가 많을 것

2.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람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기간에 국외로 이주하였을 것

3. 제2호에 따른 국외 이주로 인하여 국외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다 영주 귀국을 목적으로 「국적법」 제4조,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것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 제정안은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로 하고 있어, 독립유공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범위(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보다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지원대상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공헌 및 독립유공자 후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취지 및 지원의 필요성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⁹⁾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권의 회복’이라는 공헌 및 그 희생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신분적

9)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의무 없이 국권수호를 위해 공헌한 자발적 희생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음.¹⁰⁾

- 또한, 독립유공자의 희생이 이루어질 시기는 일제의 국권침탈시기 전·후로서 국가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시기였다는 점과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고령화로 인하여 다른 보훈체계와는 차별되는 보훈체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음.¹¹⁾

□ 다만, 국가가 독립유공자로서 예우할 보훈의 대상, 범위 및 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체적인 보훈보상의 수준, 국가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일반적으로 보훈 관계법률은 보훈대상자인 유·가족의 범위를 부양, 양육의 대상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가족에 대한 보훈보상의 취지가 원칙적으로 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 등으로 인하여 유·가족을 제대로 부양·양육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국가가 이를 지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임.

-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도,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은과 예우로서

10)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바111 결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참조.

11)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2, p.46.

그와 한가족을 이루고 가족공동체로서 함께 살아온 그 유족에 대하여서도 그에 상응한 예우를 하기 위한 취지임.¹²⁾

- 관련하여, 유공자의 손자녀의 경우, 유공자의 사망 등에 따른 영향이 자녀와 비교하여 덜 직접적이며 물질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동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호와 예우 필요성이 유공자의 자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다는 견해가 있음.¹³⁾
- 즉,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보훈보상의 특수성¹⁴⁾을 고려하더라도, 지원대상의 범위를 증손자녀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증·고손자녀의 독립유공자 본인과 부양·양육 관련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표 9]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유가족 범위 비교

구분	제정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근거 조항	특별법 제3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유가족 범위	증손·고손 자녀	배우자, 자녀, 손자 녀, 며느리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유족의 범위를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로 두고 있음(다만, 법률에 금전적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자료: 국가보훈부

- 12)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마319 결정(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사건) 참조.
13) 헌법재판소 2020. 3. 26. 2018헌마331 결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참조.
14) 독립유공자의 희생이 이루어질 시기는 국가에 의하여 보호를 기대할 수 없던 시기였던 점 및 대부분의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해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망하였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손자녀까지 유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5헌바189 결정 참조).

- 둘째, 제정안에 따른 경우 향후 5년간 320억 8,8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녀 또는 손자녀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는 다른 보훈대상자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로 인한 국가재정의 부담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⁵⁾
- 그 밖에, 제정안은 지원대상을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생계가 어려운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한정하여 한시적(5년 이내)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공자 유족들과의 보상과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도 심사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상을 종합하면,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의 희생 및 공헌, 독립유공자 유족지원의 특수성과 함께 보훈보상의 취지에 따른 전체적인 보상체계, 다른 유공자 후손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재정 추가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가 제정안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모두 사망한 경우 그 고손자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15) 다만, 제정안에 따른 지원은 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초기 지원대상 인원의 지원 기간 종료로 인하여 재정 소요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므로,¹⁶⁾ 이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⁷⁾

16) 헌법재판소 2013. 10. 24. 2011헌마724 결정(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 한정 보상금 지급 사건) 참조.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중략)...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인 손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17)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개정 대비표>

舊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되고, 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것)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보상금)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u>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한다.</u>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한다.	제12조(보상금)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나. 지원내용 및 지원 기간(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제정안은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지원 내용으로 초기정착비(제7조),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제8조), 진료비(제9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제10조), 주택 우선 공급(제12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제11조)하고 있음.

제 정 안
제7조(초기정착비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정착지원후손에게 소득인정액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기정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기정착비는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와 주거지 마련을 위한 주거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 그 기준·범위 및 절차, 지원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정착지원후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범위 및 절차, 지원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진료비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정착지원후손이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리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령, 퇴행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착지원후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지원기간)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정착지원의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착지원후손 중 세대주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정착지원후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려는 정착지원후손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정안은 외국에서 생활하다 영주귀국하는 독립유공자의 증·고손 자녀의 초기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범위를 생계·주거·취업·의료 등으로 정하고, 지원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있음.

○ 국내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대하여 정착금과 주택 우선 공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각 지원별 대상에 해당될 경우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받고 있음.

- 유사 입법례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정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생계, 취업, 교육, 주거 등의 방면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거주지에서의 보호하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⁸⁾

[표 10] 제정안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비교

구 분	제정안	독립유공자법	북한이탈주민법
정착 지원	○ 초기정착비 지급 - 생활비, 주거비	○ 정착금 지급 - 8,900~15,300만원	○ 정착금 지급 -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포함) - 장려금(취업장려금, 새출발 장려금) - 가산금
취업 지원	○ 취업지원 장려금 지급	○ 특별고용 ○ 가점취업, 직업훈련 ○ 능력개발 장려금 - 150만원	○ 직업훈련 실시 ○ 사업주 고용지원금 ○ 취업보호담당관 지정
교육 등 지원	-	○ 수업료 등 면제 ○ 학습보조비 지급	○ 중·고등교육 경비 지원 ○ 대학 진학 학비 지원
주거 지원	○ 주택 우선 공급	○ 주택 우선 공급	○ 임대주택 알선 등
의료 지원	○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 보훈병원·위탁병원 의료지원	○ 의료급여, 보험료 일부 지원
기타	○ 재가복지서비스	○ 양로·양육·요양지원 등 ○ 재가복지서비스	

* 음영: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 그 외에는 유족으로서 각 지원별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보호기준 등)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제정안의 입법취지가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귀국 초기에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하도록 지원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타 정착지원 제도와 비교하여 초기정착에 필요한 적정 기간 및 지원 범위 등을 법률안 심사 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12

참 고

법안 관련 소요 예산 추계¹⁹⁾

□ 인원 산출

○ 최초 지급 인원 : 515명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6. 현재	계
증손	31	98	61	67	46	38	29	19	5	27	4	17	12	17	12	24	2	6	515
고손	14	17	29	25	34	8	23	15	6	20	2	11	4	8	6	16	0	10	248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가 개최된 2007년 이후 인정된 증손 515명, 고손 248명(증손 없이 고손만 존재하는 경우는 없음) 인정

○ 연도별 인원 : '26년부터 매년 19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최근 10년간 국적 취득 인원 >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	평균
인원	44	34	66	42	47	66	37	38	58	35	467	47

※ 최근 10년간 평균 연 47명이 국적 취득 : 467명 ÷ 10년 = 47명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인정 후손 중 증손 비율 >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6. 현재	계	비율 (%)
자	0	2	0	1	0	0	0	1	0	0	4	1
손	4	22	6	11	8	10	9	8	1	4	83	27
증손	5	27	4	17	12	17	12	24	2	6	126	41
고손	6	20	2	11	4	8	6	16	0	10	83	27
내손 이하	0	1	0	7	1	0	0	2	0	1	12	4
계	15	72	12	47	25	35	27	51	3	21	308	100

※ 최근 10년(2015~2024) 간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통해 인정된 후손 중 증손자녀가 차지하는 비율 : 41%

⇒ 특별귀화 독립유공자 후손 인원 연 평균(47명) x 후손확인위원회 인정 후손 중 증손 비율(41%) = 19명

19) 자료: 국가보훈부

□ 소요예산 : 주거비+생계비+능력개발장려금+진료비+재가복지서비스 합계

(단위 : 원)

연도	인원	주거비	생계비	능력개발 장려금	진료비	재가복지 서비스	계
‘25	515	2,107,380,000	2,954,040,000	772,500,000	99,179,430	34,000,000	5,967,099,430
‘26	534	2,185,128,000	3,063,024,000	801,000,000	106,367,060	35,200,000	6,190,719,060
‘27	553	2,262,876,000	3,172,008,000	829,500,000	113,911,620	38,400,000	6,416,695,620
‘28	572	2,340,624,000	3,280,992,000	858,000,000	121,900,630	41,600,000	6,643,116,630
‘29	591	2,418,372,000	3,389,976,000	886,500,000	130,305,640	44,800,000	6,869,953,640
합계	-	11,314,380,000	15,860,040,000	4,147,500,000	571,664,380	194,000,000	32,087,584,380

① 주거비

(단위 : 원)

연도	인원(명)	단가	개월	계
‘25	515	341,000	12	2,107,380,000
‘26	534	341,000	12	2,185,128,000
‘27	553	341,000	12	2,262,876,000
‘28	572	341,000	12	2,340,624,000
‘29	591	341,000	12	2,418,372,000
합계				11,314,380,000

※ 기초생활보장제도(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2024년) 참고

(단위 : 원)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② 생계비

(단위 : 원)

연도	인원(명)	단가	개월	계
'25	515	478,000	12	2,954,040,000
'26	534	478,000	12	3,063,024,000
'27	553	478,000	12	3,172,008,000
'28	572	478,000	12	3,280,992,000
'29	591	478,000	12	3,389,976,000
합계				15,860,040,000

※ 2024년 생활지원금(국가보훈부) 참고

-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 (지급기준) ①생활조정수당 수급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③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5,960,496

- (지급액) ①~② 해당자: 478,000원 ③ 해당자 : 345,000원

③ 능력개발장려금

(단위 : 원)

연도	인원(명)	단가	계
'25	515	1,500,000	772,500,000
'26	534	1,500,000	801,000,000
'27	553	1,500,000	829,500,000
'28	572	1,500,000	858,000,000
'29	591	1,500,000	886,500,000
합계			4,147,500,000

※ 2024년 취업능력개발 비용(국가보훈부) 참고

- 독립유공자 유가족에 총 150만원 지급

④ 진료비

(단위 : 원)

구분	내용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보 훈 병 원	㉠대상자	515	534	553	572	591	2,765
	㉡수진횟수	0.4	0.4	0.4	0.4	0.4	
	①지원연인원 (㉠×㉡)	206	214	221	229	236	1,106
	②지원단가(원)	35,420	38,087	40,955	44,039	47,355	
	소요비용	7,296,520	8,150,620	9,051,060	10,084,930	11,175,780	45,758,900
위 탁 병 원	㉠대상자	515	534	553	572	591	2,765
	㉡수진횟수	8.7	8.7	8.7	8.7	8.7	
	①지원연인원 (㉠×㉡)	4,481	4,646	4,811	4,976	5,142	24,056
	②지원단가(원)	20,505	21,140	21,796	22,471	23,168	
	소요비용	91,882,910	98,216,440	104,860,560	111,815,700	119,129,860	525,905,470
합계		99,179,430	106,367,060	113,911,620	121,900,630	130,305,640	571,664,380

※ 보훈병원 산출 근거

㉠ 대상자 : (2025년) 증손 515명

(2026년~) 전년 인원(증손 515명)에 매년 19명 추가(19명=특별귀화 후손 47명×증손 비율 67.9%)

㉡ 수진횟수 : 2023년 독립유공자 유가족 보훈병원 수진횟수 사용

(0.4=진료연인원 35,856명÷독립유공자 유가족 의료대상자 86,861명)

② 지원단가 : '23년 독립유공자 유가족 진료단가(30,633원)에 5년 평균증감율(7.53%) 적용(단, '25년은 2회 적용)

※ 위탁병원 산출 근거

㉠ 대상자 : 보훈병원 산출 내용과 동일

㉡ 수진횟수 : 2023년 말 기준 위탁병원 감면 유족 수진횟수(8.7회) 적용

② 지원단가 : '23년 독립유공자 유족 진료단가(19,290원)에 4년 평균증감율(3.1%) 적용(단, '25년은 2회)

⑤ 재가복지서비스

(단위 : 원)

연도	대상자	지원단가	소요비용
'25	10	3,400,000	34,000,000
'26	11	3,200,000	35,200,000
'27	12	3,200,000	38,400,000
'28	13	3,200,000	41,600,000
'29	14	3,200,000	44,800,000
합계			194,000,000

